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음악영상물 등에 대한 등급분류 규정 정비 〉
■ 김승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581호)

2025. 8.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총괄적 검토	3
2. 조문별 검토	6
(1) 음악영상물 등에 대한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	6
(2) 자체등급분류 사후관리	12
(3) 표시의무 및 벌칙 등	17
※ 참고자료	21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승수의원 등 14인

나. 발 의 일 : 2025. 7. 18.

다. 회 부 일 : 2025. 7.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과일(이하 “음악영상물등”이라 함)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해당 음악영상물등을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국내외 음악산업의 특성상 음원 발매와 동시에 음악영상물등을 통한 홍보가 필요하고 그 유통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전 등급분류는 유통 지연 및 국내외 서비스제공자의 차별을 야기하고 보수적인 등급분류로 현재의 음악산업 유통구조와 맞지 않음.

이에 음악영상물등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음악영상물등의 등급을 분류하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악영상물등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등급분류가 분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3회 이상의 직권등급재분류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자체등급분류 금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음악 영상물등의 유통을 보다 활성화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17조 등).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총괄적 검토

-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음악 영상물이나 음악영상파일¹⁾도 비디오물²⁾에 해당하는바 음악영상물 등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이를 공급하기 전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함.³⁾
- 그런데 음악영상물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는 사전 심의과정에서 긴 시간이 소요되어⁴⁾ 음원 발매와 동시에 무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6. “음악영상물”이라 함은 음원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하여 해당 음원에 영상이 포함되어 제작된 것을 말하며 음악의 실연(實演)에 대한 영상물을 포함한다.
- 7. “음악영상파일”이라 함은 음악영상물이 복제·전송·송신·수신될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되거나 전자적 기기에 수록된 것을 말한다.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2. “비디오물”이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계·전기·전자 또는 통신장치에 의하여 재생되어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물
 - 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영화가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50조(등급분류)** ①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해당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여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 2.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다만,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제작·유통하거나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음악영상파일은 제외한다.
 - 3. ~ 5. (생략)

4) 【2021년~2025년 6월말 기준 뮤직비디오 등급분류 처리기간】

구분	처리기간(일) 평균	처리기간 최소	처리기간 최장
2021년	1.94	1	4
2022년	2.20	1	5
2023년	2.15	1	4
2024년	2.30	1	4
2025년 6월	2.40	2	4

직비디오를 공개하여 홍보하는 음악업계의 빠른 유통주기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음.⁵⁾

- 이에 개정안은 일반 비디오물과 달리 음악영상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면서 음악영상물에 대한 자율 등급분류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음악산업의 홍보와 유통을 보다 활성화하고 국내 음악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데 의의가 있음.

[음악영상물(개정안)과 비디오물 등급분류 제도 비교]

구분	음악영상물(개정안)	비디오물
법적근거	음악법 안 제17조(등급분류)	영화비디오법 제50조(등급분류)
대상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	비디오물
주체	사전(음악영상물을 제작·배급하는 자) /사후(영상물등급위원회)	사전(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	전체/12세/15세/청불	전체/12세/15세/청불/제한관람가

- 음악영상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 제도 도입 시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2011년) 이후 급격히 성장한 모바일 게임 시장과 같이 음악영상물의 경우에도 원활한 유통 기반의 구축으로 대중음악 산업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⁶⁾ 또한, 자체등급분류가 활성화되어 있는 게임·방송 등 타 콘텐츠산업의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완화의 형평

5) 김휘정, 인터넷 뮤직비디오 사전등급심사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국회입법조사처, 2014; 임효준, 현행 음악영상물 심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미디어와 인격권 제3권 제2호, 언론중재위원회, 2017 등

6) 한국콘텐츠진흥원, 「음악영상물 자율심의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2018.

성 차원에서도 검토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임.

- 다만, 등급분류제는 본질적으로 영상물의 내용에 대해 적절한 등급을 부여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성인에 비해 정서적으로 미발달된 청소년들을 보호하려는 것인데,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들이 수익성 제고를 위해 등급을 낮춰서 분류함으로써 등급분류제도의 취지인 청소년 보호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고, 지정을 받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나 허가·등록을 받은 방송사업자 등만 자체등급분류가 가능한 게임물 또는 방송물과 달리, 개정안은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을 제작·배급하는 자는 누구나 자체등급분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지정취소나 허가·등록 등의 취소라는 제재수단 없이 6개월 이내의 자체등급분류 금지명령만으로 실효성 있는 사업자 관리가 가능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비디오물 등 타 콘텐츠의 경우에도 등급분류 규제가 완화되어 자체등급분류제가 운영 중이며, 음악영상물 등의 신속한 유통을 통한 음악산업 진흥을 위해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나, 다만 제도개선으로 인한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요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2. 조문별 검토

(1) 음악영상물 등에 대한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

가. 개정안 요지

- 음악영상물 등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음악영상물 등에 대한 등급분류를 하되, 그 기준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안 제17조 및 안 제17조의2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등) ①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하는 자는 해당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u><신설></u>	제17조(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등) ① ----- ----- ----- ----- ----- <u>내용 및 영상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등급을 분류하여야</u> -----. 1. 전체이용가: 모든 연령의 사람이 시청할 수 있는 음악영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의 등급분류 및 판매(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의 서비스제공행위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8까지·제51조부터 제56조까지·제65조·제66조·제95조제5호부터제7호까지·제97조·제98조제1항제3호의2·제4호부터 제6호까지·제98조제2항제9호 및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비디오물”을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로, “온라인비디오물”을 “음악영상파일”로 본다.

상물 및 음악영상파일

2. 12세 이상 이용가: 12세 이상의 사람이 시청할 수 있는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

3. 15세 이상 이용가: 15세 이상의 사람이 시청할 수 있는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

4. 청소년이용불가: 청소년은 시청할 수 없는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

② 제1항 각 호의 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 존중에 관한 사항

2.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3.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4. 국가정체성 및 외교관계의 유지에 관한 사항

5. 주제 및 내용의 폭력성·선정성·반사회적 행위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6. 인간의 보편적 존엄과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및 국민정서에 관한 사항

제17조의2(등급분류 시 준수사항)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하는 자는 등급분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제17조제2항에 따른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의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것

2. 제1호에 따라 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하여 제25조제2항에 따라 등급과 내용정보등을 표시하고 이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할 것

3.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하고 해당 등급분류책임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u>실시하는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것</u> <u>4. 자체등급분류 업무와 관련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자료요청에 따를 것</u> <u>5. 그 밖에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u>
--	---

다. 검토사항

- 개정안은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배급하는 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을 분류하도록 하고, 이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함.
- 개정안에 따르면 음악영상물의 등급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분류하되⁷⁾ 제한관람가는 제외

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등급분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의 등급은 비디오물의 내용, 영상 및 대사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의 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2.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3.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4. 청소년관람불가 : 청소년은 시청할 수 없는 비디오물
5. 제한관람가 : 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시청제공·유통 등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비디오물

하고 있는데, 개정안 제17조의5에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⁸⁾를 준용하고 있는바, 제한관람가 음악영상물에 대해서는 영등위의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⁹⁾

【최근 5년간 뮤직비디오 등급분류 현황】

(단위: 편)

구분	전체관람가	12세이상 관람가	15세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계
2019년	64	8	5	1	78
2020년	522	38	22	2	584
2021년	1,238	145	82	12	1,477
2022년	2,512	251	124	32	2,919
2023년	3,349	319	143	40	3,851
2024년	3,507	250	106	42	3,905
2025년6월	1,391	121	59	23	1,594

○ 한편, 개정안에서 정하는 등급분류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¹⁰⁾ 영화

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시청제공 및 유통제한) ①누구든지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을 시청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을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에서는 제50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9) 다만, 뮤직비디오는 아동 및 청소년에 유해한 표현이 미약하거나 거의 없어 대부분 전체관람가 등급으로 결정되고 있음.

1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상영등급분류) ⑦제2항 각 호의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의

및 비디오물의 등급분류 기준과 동일함.

-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안은 모든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에 대해 자체등급분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작 주체나 유통 형태 등에 비추어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않은 영상물에 대한 등급분류 예외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고, 필요에 따라 기존 등급분류 방식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또한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자체등급분류 실시 주체를 파악·관리할 수 있도록 사전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록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유연한 정책 대응이 가능하도록 등급구간 및 분류기준 등은 하위 규정에 위임하는 등 체계나 자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임.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대한민국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3.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4. 국가정체성 및 외교관계의 유지에 관한 사항
5. 주제 및 내용의 폭력성·선정성·반사회적 행위 등에 관한 사항
6. 인간의 보편적 존엄과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및 국민정서에 관한 사항

(2) 자체등급분류 사후관리

가. 개정안 요지

- 문체부장관으로 하여금 직권등급재분류 결정을 3회 이상 받거나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6개월 이내에서 자체등급분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3 신설).
- 영상물등급위원회로 하여금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등급분류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4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7조의3(자체등급분류 금지 명령)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하는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체등급분류 금지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물등급위</u>

<신 설>

원회에 등급분류를 요청하여 그 결과로 자체등급분류 결정을 대체할 수 있다.

1. 최근 3년간 직권등급재분류 결정(다만, 이의신청이 이유 없음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2. 제17조의2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지 명령에 필요한 절차와 세부적인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4(직권등급재분류 등) 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가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등급을 재분류(이

하 “직권등급재분류”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직권등급재분류 결정을 한 경우 이를 해당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배급(수입을 포함한다)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직권등급재분류 결정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직권등급재분류에 이의가 있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다시 받을 수 있다.

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급분류를 다시 하고 이를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 없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

	· 배급(수입을 포함한다) 및 제공(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의 서비스제공행위를 포함한다)하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에 따른 이유 없음을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권등급재분류의 절차, 결정통지, 이의신청, 시정 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

다. 검토사항

- 개정안은 사업자가 3년간 직권등급재분류 결정을 3회 이상 받거나 자체등급분류 업무 관련 준수사항¹¹⁾을 위반한 경우 자체

11) **안 제17조의2(등급분류 시 준수사항)**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하는 자는 등급분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제17조제2항에 따른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의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것
2. 제1호에 따라 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하여 제25조제2항에 따라 등급과 내용정보등을 표시하고 이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할 것
3.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하고 해당 등급분류책임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것
4. 자체 등급분류 업무와 관련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자료요청에 따를 것
5. 그 밖에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등급분류를 중단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적정한 업무 수행에 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음악영상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도입할 경우, 등급분류 기준의 해석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영상물등급위원회로 하여금 등급분류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등급분류를 하도록 함으로써 자체등급분류 제도의 부작용을 보완하려는 것임.

-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가 여러번 직권등급재분류 결정을 받더라도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만이 가능한바,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정적 등급표시가 발생한 경우 우선 시정명령 및 등급조정명령을 통해 조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영상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취소하여 유통을 제한하는 등 등급적정성 시정조치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개정안은 음악영상물 등이 청소년관람불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밖의 등급도 등급분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3) 표시의무 및 벌칙 등

가. 개정안 요지

- 음악영상물 등을 제작·배급하는 자의 등급분류 표시 의무를 규정하고, 문체부장관의 자체등급분류 금지 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안 제17조의5, 제25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 등).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17조의5(준용규정) 음악영상물</u> <u>· 음악영상파일의 판매(온라인</u> <u>음악서비스제공업자의 서비스</u> <u>제공행위를 포함한다) 및 자료</u> <u>제출의 요청 등과 관련하여</u> <u>「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u> <u>관한 법률」 제51조·제53조·</u> <u>제53조의2·제56조를 준용한다.</u> <u>이 경우 “비디오물”을 “음악영</u> <u>상물·음악영상파일”로, “온라</u> <u>인비디오물”을 “음악영상파일”</u> <u>로 본다.</u>
제25조(표시의무) ① (생략)	제25조(표시의무)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할 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벌칙)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1.·2. (생략)

②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의 서비스제공행위를 포함한다)하는 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분류된 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

제34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제17조의2제1호를 위반하여 등급분류를 하지 아니하고 공중의 이용에 공급한 자

2.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의4제6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5.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u>2의2.</u> (생략) <u>3.·4.</u> (생략) ④·⑤ (생략)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 3. (생략) <u><신설></u> ② (생략)	<u>6.</u> (현행 제2호의2와 같음) <u>7.·8.</u>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36조(과태료)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u>4.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등급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한 자</u> ② (현행과 같음)
--	---

다. 검토사항

- 개정안은 음악영상물 등을 제작, 배급,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자체등급 분류한 등급을 표시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등급분류제도의 취지상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 또한, 등급분류를 하지 않고 음악영상물을 공중에 제공한 자, 자체등급분류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 직권등급재분류 조치 미이행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등급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비교할 때¹²⁾ 적절한 수준으로 보임.

- 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영상물의 유통 특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하여금 불법 음악영상파일의 취급 거부·정지·제한 등의 시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과태료와 벌칙 부과 대상을 불법 음악영상물에 관하여 공급 뿐 아니라 이를 판매·대여 또는 시정에 제공하기 위해 진열·보관한 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밖에도 권한의 위임·위탁 단체에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명시하는 등 추가적인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76

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5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비디오물을 제작·유통·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한 자

제53조(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판매·대여(이하 "유통"이라 한다)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

제98조(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9. 제6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 또는 내용정보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시방법과 다르게 표시한 자

참고1

타부처, 공공기관, 협회 및 민간업계 등 의견

○ 타부처 의견

부처명	의견 주요내용
여성가족부	• 총괄의견 : 수정 수용 -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의 원활한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음악 영상물 등의 공급과정을 효율화하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함 - 다만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하여 광범위한 대중에게 유통된다면 청소년 이 유해한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청소년 유해물로부터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음악영상 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음악영상물과 음 악영상파일의 유통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내용을 통보하여 조 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공공기관 의견

기관명	의견 주요내용
영상물 등급위원회	• 영화비디오법 개정안은 김승수 의원 발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됨을 전제로 할 때, 필요한 입법 정비로서 특별한 의견이 없음 • 다만, 김승수 의원이 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과 같이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을 제작·배급하는 자는 누구나 자율적으로 등급분류가 가능할 경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후관리 및 사업자 관리 등에 어려움이 존재함 - 음악영상물 등은 일반 영상물에 비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이 크고 유통 및 확산 속도가 빨라 사후적으로 수많은 영상물 을 모니터링하고 직권으로 분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등급분 류 제도의 취지인 청소년 보호를 달성하기 곤란 - 직권등급재분류 결정, 자체등급분류 금지 조치 등도 효율적인 사업자 관리가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 작동이 가능하므로 자 체등급분류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자 관리 및 사후 관리 방안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함 *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자 전체가 별도의 절차 없이 자율등급 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준수사항 이행 대상에 대한 관리 및 이행여부 확인 등을 현실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움

	* 음악영상물 등의 매체특성상 유통속도와 파급력이 상당하고 이미 유통된 이후에는 등급변경 등의 사후조치를 위해 통상적으로 10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이에 불복 시 이의신청 기간까지 고려하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이미 유통된 영상물에 대한 사후조치의 실효성이 없음 • 개별 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등급분류 권한을 모두 부여하기보다는 게임물, 온라인 비디오물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 또는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자체등급분류 권한을 부여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 운영의 성과와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단계적으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 필요
--	--

○ 협회 의견

협회명	의견 주요내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 국내외 음원 및 음악영상 유통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현실 및 음악, 영상 콘텐츠 시장의 규제 완화 필요성에 따른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됨 • 제17조의3 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금지명령을 한 경우에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요청하면 자체등급분류 금지명령을 안 받을 수 있다는 것인지 그 해석이 모호함
한국음악콘텐츠협회	• 개정안의 취지에 전반적으로 동의 • 다만 제작·배급사 입장에서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 구성, 교육 이수, 벌칙 조항 등 부담이 큰 경우가 있어 기존 심의제도와 병행 운영(방송사 심의 유지, 영등위 심의 선택 가능)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요청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 음레협이 2022년 경부터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왔던 뮤직비디오, 음원 심의에 대한 시간, 물리적 비효율적인 상황 개선, 복잡한 심의 절차 및 심의 소요시간 등에 대한 해결 등을 위한 목적으로 '자율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는 것은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됨 • 제17조의3 제1항에서 장관이 금지명령을 내린 경우에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요청하면 해당 금지명령의 효력이 배제되는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참고2

해외 사례

국가	등급분류 기구	기구 성격	심의성격	법률	주요 특징
미국	음반산업협회 (RIAA)	사업자협회	자율심의	×	사업자 자율규제
영국	영국영화등급분류위원회 (BBFC)	행정기관	자율심의	×	주요음악사업자와 협약
호주	등급분류위원회 (Classification Board)	행정기관	강제심의	○	법률에 의한 등급분류 의무
네덜 란드	시청각매체 등급분류기구 (NICAM)	민간기구	자율심의	×	사업자가 참여하는 비정부기구
독일	영화자율규제기구 (FSK)	민간기구	강제심의	○	사업자 자율규제와 정부개입의 혼합방식
프랑스	-	방송사	자율심의	×	방송사업자의 자율심의

* 출처: 음악영상물등급분류 제도연구(2023)

참고3

타 입법례(유사 입법례)

법률명	주요내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온라인 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영화비디오법 제50조의2 내지 50조의8)																		
	<table><tr><th>구분</th><th>내용</th></tr><tr><td>업종</td><td>•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를 한 법인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td></tr><tr><td>사업자 관리</td><td>지정제</td></tr><tr><td>지정기간</td><td>5년</td></tr><tr><td>요건</td><td>• 최근 5년간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가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td></tr><tr><td>지정방법</td><td>• △ 자체등급분류 업무 운영 계획의 적정성, △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 등 심사</td></tr><tr><td>준수사항</td><td>•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등급분류 •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 및 통보 의무 • 의무교육 연2회 이수 • 자체등급분류 업무 관련 자료제출 요청 이행</td></tr><tr><td>사후관리 및 제재조치</td><td>• 등급이 부적절한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해 직권등급 재분류, 등급조정요구, 등급분류취소 등 조치 • 준수사항 위반 시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업무정지명령 및 지정취소</td></tr><tr><td>업무 적정성 평가</td><td>• 매년 업무 적정성 평가 실시(1회)</td></tr></table>	구분	내용	업종	•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를 한 법인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사업자 관리	지정제	지정기간	5년	요건	• 최근 5년간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가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지정방법	• △ 자체등급분류 업무 운영 계획의 적정성, △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 등 심사	준수사항	•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등급분류 •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 및 통보 의무 • 의무교육 연2회 이수 • 자체등급분류 업무 관련 자료제출 요청 이행	사후관리 및 제재조치	• 등급이 부적절한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해 직권등급 재분류, 등급조정요구, 등급분류취소 등 조치 • 준수사항 위반 시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업무정지명령 및 지정취소	업무 적정성 평가	• 매년 업무 적정성 평가 실시(1회)
	구분	내용																	
	업종	•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를 한 법인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사업자 관리	지정제																	
	지정기간	5년																	
	요건	• 최근 5년간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가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지정방법	• △ 자체등급분류 업무 운영 계획의 적정성, △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 등 심사																	
	준수사항	•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등급분류 •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 및 통보 의무 • 의무교육 연2회 이수 • 자체등급분류 업무 관련 자료제출 요청 이행																	
	사후관리 및 제재조치	• 등급이 부적절한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해 직권등급 재분류, 등급조정요구, 등급분류취소 등 조치 • 준수사항 위반 시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업무정지명령 및 지정취소																	
업무 적정성 평가	• 매년 업무 적정성 평가 실시(1회)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게임물 자체등급분류(게임산업법 제21조의2 내지 21조의11)																		
	<table><tr><th>구분</th><th>내용</th></tr><tr><td>업종</td><td>• 게임제작업·배급업·제공업을 영위하는 자 •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td></tr><tr><td>사업자 관리</td><td>지정제</td></tr><tr><td>지정기간</td><td>3년</td></tr><tr><td>요건</td><td>•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자본금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것 • 등급분류 책임자 및 전담인력을 둘 것 • 소속 직원 외 2인 이상의 자문 전문가를 둘 것 •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 구축 및 위원회와 연계 • 게임산업법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제재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td></tr><tr><td>지정방법</td><td>• 자체등급분류 업무 운영 계획의 적정성 심사</td></tr><tr><td>준수사항</td><td>•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등급분류 •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 및 통보 의무 • 의무교육 연4회 이수 • 자체등급분류 업무 관련 자료제출 요청 이행 • 위촉 전문가의 활동 보고서 제출</td></tr><tr><td>사후관리 및 제재조치</td><td>• 등급이 부적절한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해 직권등급 재분류, 등급조정요구, 등급분류취소 등 조치 • 준수사항 위반 시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업무정지명령 및 지정취소</td></tr><tr><td>업무 적정성 평가</td><td>• 매년 업무 적정성 평가 실시(1회)</td></tr></table>	구분	내용	업종	• 게임제작업·배급업·제공업을 영위하는 자 •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사업자 관리	지정제	지정기간	3년	요건	•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자본금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것 • 등급분류 책임자 및 전담인력을 둘 것 • 소속 직원 외 2인 이상의 자문 전문가를 둘 것 •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 구축 및 위원회와 연계 • 게임산업법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제재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지정방법	• 자체등급분류 업무 운영 계획의 적정성 심사	준수사항	•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등급분류 •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 및 통보 의무 • 의무교육 연4회 이수 • 자체등급분류 업무 관련 자료제출 요청 이행 • 위촉 전문가의 활동 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및 제재조치	• 등급이 부적절한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해 직권등급 재분류, 등급조정요구, 등급분류취소 등 조치 • 준수사항 위반 시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업무정지명령 및 지정취소	업무 적정성 평가	• 매년 업무 적정성 평가 실시(1회)
	구분	내용																	
	업종	• 게임제작업·배급업·제공업을 영위하는 자 •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사업자 관리	지정제																	
	지정기간	3년																	
	요건	•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자본금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것 • 등급분류 책임자 및 전담인력을 둘 것 • 소속 직원 외 2인 이상의 자문 전문가를 둘 것 •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 구축 및 위원회와 연계 • 게임산업법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제재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지정방법	• 자체등급분류 업무 운영 계획의 적정성 심사																	
	준수사항	•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등급분류 •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 및 통보 의무 • 의무교육 연4회 이수 • 자체등급분류 업무 관련 자료제출 요청 이행 • 위촉 전문가의 활동 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및 제재조치	• 등급이 부적절한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해 직권등급 재분류, 등급조정요구, 등급분류취소 등 조치 • 준수사항 위반 시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업무정지명령 및 지정취소																	
업무 적정성 평가	• 매년 업무 적정성 평가 실시(1회)																		